

勞 動 經 濟 論 集

第26卷(2), 2003. 6, pp. 31~59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분석*

윤 정 열**

본고는 실업보험과 연금을 통합시켜 실직자가 실업급여 이외에 자신의 미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통합실업보험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 제도하에서 실업급여와 연금담보대출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합실업보험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적으로 우월하고, 실업급여 수준은 근로자 위험기피도, 구직유인의 중요성 그리고 실업기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짐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본고에서는 같은 원리에 의해 연금을 실업보험 뿐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과도 동시에 통합하는 것이 후생적으로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다.

— 주제어 : 통합실업보험제, 실업보험, 연금, 구직유인

I. 서 론

외환위기 이후 우리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이 자주 제기되었고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이다. 기업이 고용조정을 좀더 신축적으로 할 수 있게 함으

* 투고일: 2003년 3월 27일, 심사일: 4월 1일, 심사완료일: 5월 6일.

** 이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보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jyun@ewha.ac.kr)

로써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론도 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는 우리 노동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자리잡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과제가 바로 고용의 불안정성 혹은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제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온 고용보험제의 확대가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실업급여 혜택은 그 수준이나 지급기간이 매우 제한적인 형편이다. 즉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직에 대비한 소득보장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가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실업급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부작용 때문이다. 많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듯이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의 구직유인을 감퇴시키고 그에 따라 전체적 실업률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제도도 구직유인 감퇴라는 형태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야기시키고, 바로 이것이 고용보험제의 효과적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보험제의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실직자들에 대한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실업보험제보다 실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제도는 실업보험을 기존의 연금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본고에서는 통합실업보험제라고 칭한다.¹⁾

통합실업보험제에서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 연금에서 일부를 빌려 사용하게 된다. 즉 통합실업보험제에서 근로자는 연금 대출과 실업급여에 의해 실직시 소득보장을 도모하게 된다. 실업급여는 세금에 의해 충당되는 것인 만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득에 의해 실직위험에 대처하는 것인 만큼 일종의 자가보험(self-insurance)이라고 할 수 있

1) 실업보험제 관련 문헌에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예컨대, 실업급여 구조의 변화 등 —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보완 이후에도 여전히 실업보험제는 구직유인 감퇴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통합실업보험제는 제도적 보완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구직유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

연금 대출에 의한 자가보험은 두 가지 중요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다. 첫째, 연금 대출은 실직자 자신의 소득으로 충당되는 것이어서 실업급여에서 볼 수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 혹은 실직자들의 구직유인 감퇴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둘째로, 실직 시 자신의 일생소득이 연금 대출만큼 감소하게 됨으로써 위험기피적인 근로자들은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금 대출에 따른 위험 부담의 크기는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것은 연금 대출로 일생소득의 감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 감소는 근로자의 전 퇴직기간 및 근로기간에 걸쳐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정한 소득 감소가 여러 기간에 걸쳐 분산될수록 그 위험 부담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 감소의 크기에 비례하는 실직자의 구직유인은 소득 감소가 어떻게 분산되는가와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다.

결국 통합실업보험제에서는 불충분한 실업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부담의 크기가 기존의 실업보험제에 비해 더 적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실업보험제에 비해 근로자가 직면하고 있는 구직유인-소득보장 간의 상충관계를 보다 완화시켜 주게 되는 것 이고, 이를 통해 통합실업보험제는 보다 효과적인 실직자 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합실업보험제하에서 실직자의 소득이 실업급여와 연금 대출에 의해 각각 어느 정도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도 본 논문에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위험기피 현상이 커서 소득보장의 욕구가 큰 경우에 그리고 구직유인 문제가 덜 심각한 경우에 실직자 소득의 보다 많은 부분이 연금 대출보다는 실업급여에 의해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실업기간 (혹은 실업에 따른 소득 감소분)이 전체 일생 (혹은 일생소득)에 비해 적을수록 실직에 따른 위험 부담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직자 소득이 실업급여보다는 연금 대출에 의해 보다 많이 충당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실직자에게 연금 대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실업급여의 비중은 기존의 실업보험제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업에 따른 소득 감소가 일생에 걸쳐 분산되어어서 자가보험으로 발생되는 위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직자 소득의 상당 부분이 연금을 포함한 자신의 일생 저축에 의해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이 점에서 통합실업보험제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즉 적정 자가보험 수준이 실직 당시까지 축적된 저축 규모를 능가하기 때문에 실직자의 미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

아 유동성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바로 이러한 기능을 통합실업보험제가 수행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실직 위험은 흔히 젊은 근로자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은 자신의 저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직을 당하게 되어 실직자 소득보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직자에게 정부가 기존의 실업보험제처럼 세금에 의해 충당된 실업급여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불충분한 실업급여(구직유인 문제 때문에)로 근로자는 실직에 대비하여 무리한 저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실업보험제로 실직자가 자신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근로자가 사전적으로 무리한 저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보다 효율적인 소비패턴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본시장이 완전하여 실직자가 자신의 미래 연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정부가 통합실업보험제의 방식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결국 통합실업보험제는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 불충분한 저축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 구직유인 감퇴를 최소화하면서 실직에 따른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여건하에서 이와 같은 통합실업보험제의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퇴직금의 기업연금화이다.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되는 방법에서 퇴직시 일정 금액을 실직자 소득으로 충당하고 양이나 음의 잔액을 연금으로 이전시킨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기업연금제가 본고에서 논의한 통합실업보험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통합실업보험제를 논의할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실직자 소득의 구성 — 실업급여와 자가보험 — 이 여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설명한다. 또 통합실업보험제가 효율성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를 밝히고 통합실업보험제가 기존의 실업보험제에 비해 어느 정도 근로자 복지에 기여하는가를 설명한다. 그리고 제Ⅲ, Ⅳ장에서는 각각 통합실업보험제에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쟁점들 및 통합사회보험제 논의를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논의 요약과 함께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모 형

어떤 근로자가 일생에 걸쳐서 $(M+2)$ 의 기간 동안 일하고 나머지 N 기간 동안 은퇴생활을 한다고 하자. 이 근로자는 1기에 취업되어서 일한 후 2기에 q 의 확률로 실업을 당할 가능성을 맞게 된다. 실업을 당한 근로자는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게 되는데, 분석을 간략히 하기 위해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모형화하기로 한다.

실직을 당한 근로자는 구직노력을 강하게 혹은 약하게 할 수 있다. 강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그 노력 비용이 e 만큼 들어가지만 실직자는 바로 취업되어 실업기간을 거치지 않고 1기에 이어 2기에도 계속 고용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약한 구직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그 노력비용이 0이지만 2기에 취업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게 되며 3기 이후부터 고용상태에 있게 된다.

구직노력비용 e 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나타내기 위해 e 를 확률변수로 취급하고 그 확률분포는 분포함수 $F(\cdot)$ 로 나타내기로 하자. 이 경우 실직을 당한 근로자는 기준 노력비용 e' 를 정하고 만일 구직노력비용 e 가 e' 보다 크면 (혹은 적으면) 강한 (혹은 약한)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근로자가 2기에 실직을 당할 확률은 $q(1 - F(e')) (\equiv q')$ 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실업빈도나 실업기간을 매우 단순하게 모형화하고 있다. 좀 더 완전한 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실업이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또 실업기간도 본고에서처럼 1기간으로 정해지지 않고 확률변수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추후 논의하겠지만, 실업빈도나 기간의 불확실성이 본고의 주된 요점인 통합실업보험제의 효율성 논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본 모형에서는 근로자들의 은퇴에 대비한 연금제도가 있는데 이 연금은 일종의 강제연금제로서 이를 위해 고용된 개별 근로자는 임금 중 일정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납부한다. 이 때 연금은 확정각출형과 확정급부형 중 어떠한 형태라도 상관없으나 여기에서는 확정각출형으로 가정하겠다.

실직자는 두 가지 형태의 실직소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실업보험세 T^2)로 충당되는

실업급여 r 과 자신의 미래의 연금저축으로 충당되는 자가보험 R 이다. 이 모형에서는 실업보험세 T 가 1기에만 징수되는 것으로 가정한다.³⁾

끝으로 근로자의 단위 기간당 효용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U(C) - e$$

여기에서 $U > 0$, $U' < 0$ 을 가정하고 위험기피도(risk-aversion)는 δ 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특히 본 모형에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금전 및 효용의 할인율을 0으로 가정하고 또 임금이 매기마다 w 로서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할인율이 0보다 크거나 임금이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본고의 주된 요점은 변화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한다.

본 모형에서 근로자의 소비는 시기별 그리고 상태별로 달라질 수 있다. 2기 이후부터 각 근로자는 두 상태 중의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하나는 2기에 실업을 당하지 않는 상태('n'으로 표시)이고 다른 하나는 2기에 실직을 당한 상태('u'로 표시)이다. 일정한 임금과 0의 할인율 가정하에서 근로자의 각 기별 소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C_1 = w(1 - s_1 - T)$$

$$C_{n,t} = w(1 - s_n), \quad t = 2, \dots, M+2$$

$$C_{n,t} = w \frac{(M+1)s_n + s_1}{N}, \quad t = M+3, \dots, M+N+2$$

$$C_{u,2} = w(r + R)$$

$$C_{u,t} = w(1 - s_u), \quad t = 1, \dots, M+2$$

$$C_{u,t} = w \frac{Ms_u + s_1 - R}{N}, \quad t = M+3, \dots, M+N+2$$

여기에서 $C_{i,t}$ ($i = n, u$)는 상태 i 별 t 기의 소비를 나타내고 s_i ($i = n, u$)는 상태 i 별 기간당 저축비율을 나타낸다.

통합실업보험체의 효율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우선 근로자의 기대효용 V 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소비패턴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상태별 기간별 효율

2) 현실적으로 남부되고 있는 실업보험료는 실업보험세이다. 본고에서는 실업부조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3) 이 가정은 본고의 주된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적인 저축률과 실업급여, 그리고 자가보험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통합실업보험제의 내용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구직유인 조건과 정부의 재정균형 조건하에서 개별 근로자의 기대효용을 극대화시키는 $(s_1^*, s_n^*, s_u^*, r^*, R^*, T^*)$ 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즉

$$\begin{aligned} & \text{Max}_{s_1, r, T} V(\cdot) \\ &= U(w - s_1 w - Tw) + (1 - q^*)I(M, N, s_1) + q^*J(r, M, N, s_1) - q \int_0^{e^*} e dF(e) \end{aligned} \quad (1)$$

제약조건:

$$e^* = I(M, N, s_1) - J(M, N, s_1) \quad (\text{구직유인 조건}) \quad (2)$$

$$T = q^* r \quad (\text{정부재정 균형}) \quad (3)$$

$$r \geq 0 \quad (4)$$

여기에서

$$q^* = q(1 - F(e^*))$$

$$I(M, N, s_1) = \text{Max}_{s_1} (M+1)U((1-s_n)w) + NU\left(\frac{(M+1)s_n + s_1^*}{N} w\right) \quad (5)$$

$$J(r, M, N, s_1) = \text{Max}_{s_1, R} U((r+R)w) + MU((1-s_n)w)$$

$$+ NU\left(\frac{Ms_n + s_1^* - R}{N} w\right) \quad (6)$$

I(.) 및 J(.)는 2기 시점에서 근로자가 각각 상태 N 및 U에 있는 경우의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앞으로 편의상 임금 w는 1로 가정하기로 한다.

우선 식(5)와 식(6)으로부터 주어진 (s_1, r) 에서 상태별 저축률 (s_n^*, s_u^*) 과 자가보험 R^*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1 - s_n^* \equiv C_n^* = \frac{M+1+s_1}{M+N+1} \quad (7)$$

$$1 - s_u^* \equiv C_u^* = \frac{M+r+s_1}{M+N+1} = C_n^* - X_{u,n}^*, \quad (8)$$

$$R^* = C_u^* - r \quad (9)$$

여기에서 $X_{u,n}^* \equiv \frac{1-r}{M+N+1}$ 로서 두 상태 N와 U에서의 단위기간당 소비 금액의 차이를 나타낸다. 결국 일단 1기 저축 s_1 과 실업급여 r 이 주어지면 나머지 저축률과 자가보험은 그 이후 기간 동안의 소비 균등화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최적 s_1^* 과 r^* 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구직유인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구직유인 조건 (2)를 s_1^* 과 r^* 에 대해서 미분하면

$$\frac{\partial e^*}{\partial s_1} = U\left(\frac{M+1+s_1}{M+N+1}\right) - U\left(\frac{M+r+s_1}{M+N+1}\right) < 0 \quad (10)$$

$$\frac{\partial e^*}{\partial r} = -U\left(\frac{M+r+s_1}{M+N+1}\right) < 0 \quad (11)$$

이 된다. 식 (11)은 실업급여 r 이 구직유인을 감퇴시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식 (10)은 실업전 저축 s_1 이 소득효과를 통해 구직유인을 감퇴시킨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구직유인 효과를 감안하여 s_1^* 과 r^* 의 필요조건을 구하면 envelope 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U_1' - U_n') + q^*(U_u' - U_n')(1 - \eta \frac{U_1'}{U_n'}) = 0 \quad (12)$$

$$-U_1' + U_n'(1 - \eta \frac{U_1'}{U_n'}) = 0 \quad (13)$$

(여기에서 $U_i' \equiv U(C_i)$, $i=1, u, n$ 이고 $\eta \equiv \frac{\partial q^*}{\partial r} \frac{r}{q^*} = \frac{f(e^*)}{1-F(e^*)} U(C_u)r$ 이다.)

η 는 실업급여의 재취업 탄력성을 표시한 것으로서 많은 실증연구에서 적지 않은 값으로 추정되고 있다.

s_1^* 과 r^* 은 식 (12)와 식 (13) 의해 동시에 결정되고 그 2계조건도 충족된다.⁴⁾

4) 2계조건이 충족되는 충분조건은 $dq^*/dr < 2(M+N+1)$ 으로서 현실적으로 실직기간이 전 일

1. 통합실업보험제의 특징

통합실업보험제는 식 (7)~(9)와 식 (11)~(12)에 의해 결정되는 적정 소비패턴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적정 실업급여 r^* 및 적정 자가보험 R^* 은 통합실업보험제가 포함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통합실업보험제의 실업급여와 자가보험의 여건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식 (12), (13)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다.

$$s_1^* = s_1(r, \delta, M, N, q) : -D_{1,n} + q^* D_{u,n} = 0 \quad (14)$$

$$r^* = r(s_1, \delta, \eta, M, N, q) : D_{u,n} - \frac{\eta}{1-q^*+\eta} = 0 \quad (15)$$

$$\text{여기에서 } D_{i,j} = \frac{U_i' - U_j'}{U_i'}, \quad i, j = 1, n, u.$$

식 (14)는 실업전 저축 s_1^* 은 실업급여 수준 r^* 이 주어지면 기간별 및 상태별 소비 평준화의 원칙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준다. 이 경우 실업전 저축의 구직유인 효과는 식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준 r^* 의 결정과정에 나타난다. 식 (15)는 적정 실업급여 수준 r^* 이 상태별 소비 평준화, 즉 소득보장 원칙과 구직유인 감퇴 문제를 조화하는 방식으로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식 (15)의 둘째 항은 실업급여의 구직유인 효과가 실업급여의 실직자 재취업 탄력성 η 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실업전 저축의 구직유인 감퇴 효과를 감안하여 적정 실업급여 수준이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실업급여 r 의 상승이 실업전 저축 s_1 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구직유인 감퇴를 가져오는 s_1 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실업급여가 조금 더 크게 결정되는 것이다.⁵⁾

식 (15)의 첫째 항은

생에 비해 매우 짧다는 사실 — 즉 $(M+N+1)$ 이 매우 크다는 사실 — 을 감안하면 이 충분조건은 쉽게 충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이러한 내용이 둘째항 분모의 q^* 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전 저축의 구직유인 감퇴 효과가 없다면 식 (15) 둘째항 분모에 q^* 이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적정 실업급여 수준이 더 낮게 결정될 것이다.

$$D_{u,n} \cong \delta X_{u,n}$$

이므로 이는 실업급여 r 의 한계적 소득보장 효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실업에 따라 발생한 소비 감소분은 $(1-r)$ 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보장 효과는 실업에 따른 기간별 소득 감소 $X_{u,n} (\equiv \frac{1-r}{M+N+1})$ 에 비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통합 실업보험제는 근로자로 하여금 실업에 따른 소득 감소 부담을 전 일생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직에 따른 위험 부담이 $\frac{1}{M+N+1}$ 의 비율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통합실업보험제가 기존의 실업보험제에 비해 좀더 효과적으로 소득 보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실업보험제의 특징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적정 실업 급여 수준 r^* 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실직자들의 소득이 모두 연금에 의한 자가보험의 방식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볼 때 이 경우는 s_1^* 과 r^* 이 식 (15)와 (16)에 의해 내부해(interior solution)를 갖지 못하고 일종의 corner solution을 갖는 경우로서,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리를 제시할 수 있다.

(정리 1)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한다고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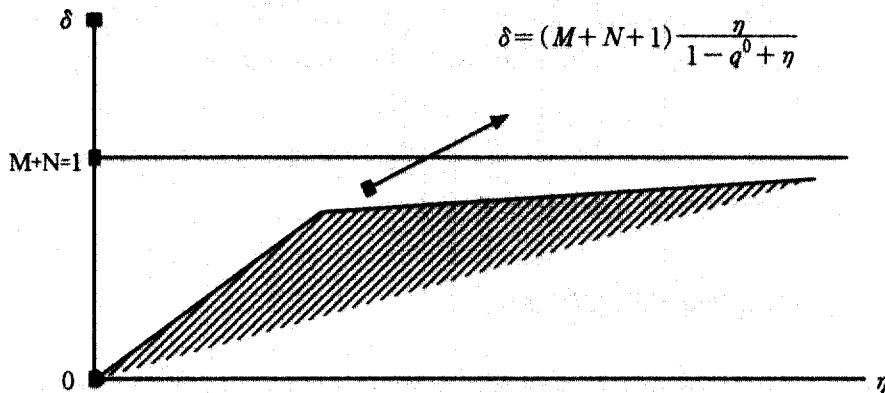
$$\delta \leq (M+N+1) \frac{\eta}{1 - q^o + \eta} \quad (16)$$

여기에서 q^o 는 $r=0$ 이고 $s_1 = \frac{N+q^o}{M+N+2}$ 일 경우의 실업확률이다. 이 때 통합실업보험제는 실업급여를 포함하지 않는다. 즉, $r^* = 0$ 이다.

이 정리의 증명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실업급여가 0이 되는 조건 식 (16)은 [그림 1]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 1]과 식 (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기피도 δ 가 낮을수록, 실업급여의 재취업 탄력성 η 이 높을수록, 그리고 실업기간이 전 일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짧을수록 (즉 M 혹은 N이 클수록) 통합실업보험제는 실업급여를 포함하지 않게 된

(그림 1) 실업급여가 0인 조건 (빚금친 부분)



다. 특히 위험기피도 δ 가 $(M+N+1)$ 보다 작으면 재취업 탄력성 η 이 1보다 크게 적지 않은 이상 실업급여가 0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실업기간이 일생에 비해 짧으며 (즉 M, N 이 크며) 재취업 탄력성 η 이 작지 않게 추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통합실업보험제는 실업급여를 내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통합실업보험제가 양(+)의 실업급여를 내포하는 경우 실업급여 r^* 과 자가보험 R^* 의 상대적 크기가 여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정리 2]를 세울 수 있다.

[정리 2]

$$(i) \quad \frac{\partial r^*}{\partial \eta} < 0, \quad \frac{\partial R^*}{\partial \eta} > 0, \quad \frac{\partial C_u^*}{\partial \eta} < 0$$

$$(ii) \quad \frac{\partial r^*}{\partial \delta} > 0, \quad \frac{\partial C_u^*}{\partial \delta} > 0$$

$$(iii) (M+N+1)이 증가하여 \delta(\frac{1}{\eta} + 1) 수준에 이를수록 r^* \rightarrow 0.$$

[정리 2]는 통합실업보험제에서 실업급여 및 자가보험 그리고 실직자 소득이 근로자 위험기피도, 실업급여의 재취업 탄력성, 그리고 실업기간의 상대적 길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재취업 탄력성으로 표시되는 구직유인 문제가 심각할수록 실업급여 수준은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가보험은 늘어날 것이지만 전

체적으로 실업소득은 실업급여에 따른 비효율성 증가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의 위험기피도가 높아지면 실직 위험에 따른 소득보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실업급여 수준이 커지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실업소득도 증가하게 된다. 한편, 실업기간이 짧을수록 실직위험 부담이 일생에 분산되어 더욱 적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데, 실업기간이 일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통합 실업보험제는 실업급여를 포함하지 않게 된다.

2. 통합실업보험제의 당위성

[정리 1]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합실업보험제는 실업급여를 거의 포함하지 않거나 아니면 포함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아서 실업소득의 상당부분이 자가보험에 의해 충당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실직자가 상당 수준의 자가보험을 담당할 수 있는 개인저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체로 실직은 경력 초기 단계에 자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직자로서는 실직에 대비한 개인저축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적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통합실업보험제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개인 저축이 불충분한 실직자로서 자가보험 충당을 위해 자신의 미래 저축인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완전한 자본시장의 여건에서 실직자가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받기는 어렵다. 결국 자가보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자본시장 때문에 통합실업보험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만일 자본시장이 완전하다고 하면 정부가 굳이 연금과 실업보험을 통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본절에서는 통합실업보험제의 당위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실직을 당하는 경우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 없이도 적정 수준의 자가보험을 충당할 수 있는 개인 저축이 가능한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은 근로자 저축 중 퇴직까지 인출할 수 없는 저축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강제연금제에 납부하는 근로자의 강제저축은 실직시에도 인출할 수 없는 저축이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저축은 통합실업보험제의 당위성을 따질 때에는 개인 저축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제저축비율이 높은 상황일수록 통합실업보험제의 당위성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단 강제저축이 없다고 가정하여 통합실업보험제의 당위성을 분

석하고 그 후 이 문제가 강제저축 비중이 늘어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따져 보기로 한다.

강제저축이 없다면 실직자가 자신의 적정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액은 $(C_u^* - (r^* + s_1^*))$ 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실업보험제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이 대출 소요금액이 양(+)이 될 경우, 즉 식 (8)과 (9)에 의해

$$r^* + s_1^* < \frac{M}{M+N} \quad (17)$$

가 성립될 때이다. 조건 (17)이 만족되는 경우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고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M)이 퇴직기간(N)에 비해 길다고 가정한다.⁶⁾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적정 실업급여 r^* 이 0이 되는 경우에는 식 (17)이 성립하고 통합실업보험제의 당위성이 확보된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가 0일 때 적정 실업전 저축 s_1^* 은

$$s_1^* < \frac{N+1}{M+N+2} < \frac{M}{M+N}$$

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적정 실업급여 r^* 이 적을수록 식 (17)이 만족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낮은 실업급여 수준을 실업전 저축이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통합실업보험제가 후생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정리 3)

주어진 η, M, N 에서

$$\delta > (\langle) \frac{\eta}{1-q^*+\eta} (M+N+1) \Gamma^{-1} = h(\eta, M, N) \quad (18)$$

일 때 통합실업보험제는 당위성을 갖는다. 여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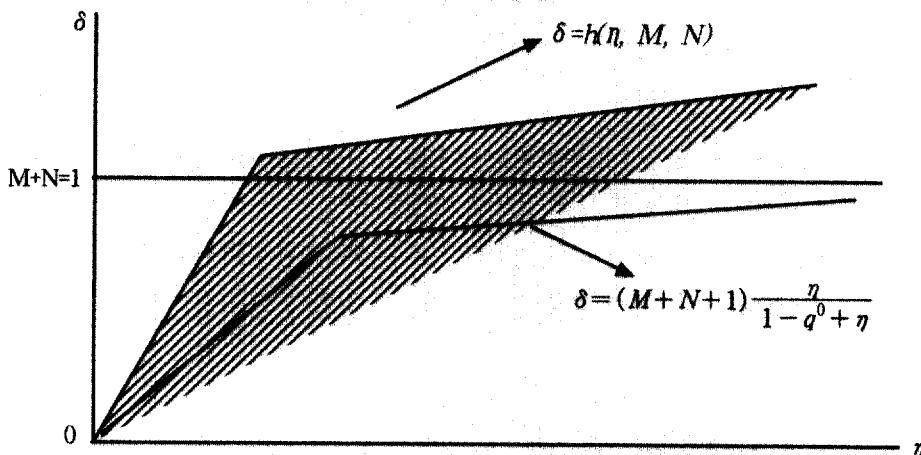
$$\Gamma \equiv 1 - \left(\frac{M}{M+N} - \frac{N}{M+N+2} + \frac{q^*}{M+N+2} \right) \left(1 - q^* \frac{M+N}{M+N+2} \right)^{-1} \in (0, 1) \text{ 이}$$

6) 이 가정은 대체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 또 $h_1 > 0$ 이고, 큰 M, N 에 대해서 $|h_M|, |h_N| > 0$ 이 성립된다.

통합실업보험제의 당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조건 식(18)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통합실업보험제의 당위성 조건(빚금친 부분)



위 그림과 [정리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근로자가 덜 위험기피적이고 ② 구직 유인 문제가 심각할수록, 그리고 ③ 실업기간이 일생에 비해 비교적 짧을수록 통합실업 보험제는 근로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당위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통합실업보험제의 당위성 조건에 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대체로 최근 실증연구에 따르면 실업기간이 근로자 일생에 비해 매우 짧다는 사실 (즉 M, N 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고,⁷⁾ 또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실업급여의 재취업 탄력성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통합실업보험제는 현실적으로 그 당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통합실업보험제가 도입될 경우 후생 증기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제저축은 통합실업보험제의 당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강제저축은 그 정의상 개인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는 저축이기 때문에 개인 후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정부는 강제저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개인이 근시안적(myopic) 시각

7) M. Feldstein and D. Altman(1998); M. Vodopivec and J. Yun(2002).

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이다. 즉 일단 퇴직한 개인이 퇴직 생활을 위한 저축이 없는 경우 정부가 그들의 최저생활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알고 있는 개인이 퇴직 이전에 충분한 연금저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저축이 통합실업보험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본절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적정 저축의 일정(a) 비율을 연금을 위한 강제저축하도록 한다고 하자. 이 때 강제저축이 적정 저축 수준보다 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저축비율 a 는 1보다 적은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 강제저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 저축을 능가하지 않는 한 강제저축 비율 a 는 근로자의 저축이나 적정 실업급여의 수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실업보험제가 후생 증가를 가져오기 위한 조건은 식(17) 대신

$$r^* + (1 - a)s_1^* < \frac{1}{M+N}(M + as_1^*) \quad (17')$$

이 될 것이다. 이 때 주어진 η, M, N 에서 통합실업보험제의 당위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기피도 $h(\eta, M, N)$ 는 $h(\eta, M, N : a)$ 로 표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리를 정립할 수 있다.

(후속 정리)

$$\frac{\partial h}{\partial a} < 0.$$

이 정리는 강제저축 비율이 높아질수록 통합실업보험제가 도입되어 후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강제저축 비율이 높을 경우 실직을 당해도 인출할 수 있는 개인 저축이 적기 때문에 미래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더욱 필요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통합실업보험제가 개인 소득이 높은 국가보다는 개인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더욱 당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개인들이 강제연금 납부 부담으로 자발적 저축의 여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소득 국가에서는 정부가 강제연금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강제성 저축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사회보험 — 예컨대 실업보험 — 을 시행하는

것은 개인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전에서 통합실업보험제는 개인들로 하여금 연금의 일부를 실직위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후생증진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3.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증대 효과

본절에서는 실업보험제가 연금에 통합됨으로써 연금에 통합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어느 정도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따져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실업급여 r 이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통합된 실업보험제와 통합되지 않은 실업보험제가 후생 면에서 서로 어떻게 비교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실업급여가 적정하게 선택된 통합실업보험제는 어느 정도의 후생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실업급여 r 이 정해져 있을 때 근로자들은 실업전 저축 s_1 을 식(14)에 의해 선택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 구직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구직을 위한 최대한의 구직비용 e' 은 다음과 같이 결정될 것이다.

$$\begin{aligned} e(r, M, N) = & (M+N+1) \left[U\left(\frac{M+1+s_1(r, M, N)}{M+N+1}\right) \right. \\ & \left. - U\left(\frac{M+r+s_1(r, M, N)}{M+N+1}\right) \right] \end{aligned} \quad (19)$$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리를 세울 수 있다.

(정리 4)

$\max_{i,j=1,n,u} |C_i - C_j| < \varepsilon$ 가 되는 어떠한 $\varepsilon (> 0)$ 에 대해서도 $K(<\infty)$ 가 존재하여 모든 $M (> K)$ 혹은 $N (> K)$ 에 대해 통합실업보험제가 구직유인 $e(r, M, N)$ 과 소비행태 $\{C_1, C_n, C_u\}$ 를 달성할 수 있다.

위 정리는 실업보험제가 연금에 통합되면 기존의 실업보험제와 비교했을 때 구직유인은 같으면서 실직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소비를 상태별로 크게 평준화시켜 실직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실업급여 수준에 의해 구직유인이 결정되지만 통합실업보험제는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보다 큰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가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기능은 구직유인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직유인은 실업급여의 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소득보장은 실업급여 및 자가보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실업급여가 0이라 하더라도 실직기간이 일생에 비해 충분히 짧으면 통합실업보험제는 충분한 소득보장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실업보험을 연금에 통합시키면서 실업급여를 적절하게 조정한다면 통합실업보험제는 기존의 실업보험제에 비해 더욱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통합실업보험제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후생 수준은 실업기간이 근로자 일생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일 실업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면 통합실업보험제는 자가보험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완벽한 소득보장을 제공하면서 구직유인 감퇴를 유발시키지 않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리를 제시할 수 있다.

(정리 5)

M 과 N 이 상호 일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즉 $\frac{M}{N} = a$) 무한대로 근접하면 통합실업보험제는 구직유인 감퇴에 따른 비효율성을 유발시키지 않고 위험기피적인 근로자에게 완벽한 소득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실업급여 수준과 자가보험 수준은 각각 0 및 $\frac{a}{1+a}$ 에 근접한다.

결국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증대 효과는 실업기간이 일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비중이 제로에 가까울수록 통합실업보험제에서는 구직유인 감퇴 없이 실직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 통합실업보험제는 실업급여를 거의 포함하지 않게 되며, 모든 실직자 소비는 연금 대출에 의한 자가보험으로 충당된다.

III. 추가 논의

1. 할인율과 가변적 임금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할인율이 제로이고 임금도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모형에 할인율이 도입되거나 가변적 임금을 고려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저축과 자가보험 수요 등이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는 통합실업보험제의 형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합실업보험제가 후생을 중대시킨다는 주된 요점에는 변화가 없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저축에 영향을 주는 한 요인으로서 할인율과 이자율의 상대적 크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할인율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혹은 낮으면) 실직 대비 저축의 비용이 더 커지게(혹은 적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개인의 저축이 그만큼 감소(혹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⁸⁾ 이렇게 볼 때 통합실업보험제는 할인율의 이자율에 대한 상대적 수준에 따라 그 당위성을 결정하는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근로자 임금은 경력 증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경력상 임금 변동은 근로자 개인의 저축에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경력 초기에 임금이 낮고 후기로 갈수록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근로자들은 경력 초기에는 별로 저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실직이 경력 초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직자들의 연금대출 수요가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어 통합실업보험제의 당위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 경력별 임금 상승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통합실업보험제에서 실업급여의 비중이 줄고 그 대신 자가보험의 비중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2. 실업빈도의 불확실성

지금까지는 근로자 일생에 실직위험이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현실적으로

8) 이 문제에 관해서는 Costain(1999)과 Lentz(2001) 참조.

는 실직위험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본 모형에 복수의 실직위험이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증대 논리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실직위험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통합실업보험제에서의 실업급여 및 자가보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실직자의 경우 장래 실직위험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그의 미래 기대연금 수준이 낮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적정 자가보험 수준도 줄어들 것이다. 또 과거 실직을 자주 경험했던 실직자의 경우에도 그의 미래연금 수준이 낮아 적정 자가보험 수준이 감소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근로자의 (기대) 실직빈도가 높을수록 자가보험 수준은 줄어들고 그 대신 실업급여의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또, 자가보험 수준이 적어지는 만큼 통합실업보험제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후생증대의 크기도 감소할 것이다.

실직위험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근로자가 실직을 자주 겪어 미래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고 나서 통합실업보험제도로부터 이탈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히 고용 추적이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 탈퇴 가능성은 자가보험 수준에 상당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그만큼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증대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이탈할 경우 연금제도에 수반된 여러 가지 혜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에 남아 있고자 하는 유인도 있다. 일반적으로 실직을 자주 겪은 근로자일수록 제도 탈퇴 유인이 강하고 제도 잔류 유인이 약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적정 자가보험 수준은 근로자의 과거 실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근시안적 태도

본고에서는 근로자들이 합리적이라는 전제 아래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들은 실직시 받는 연금 대출이 미래 자신이 갚아야 하는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금 대출이 더 이상 자가보험이 될 수 없으며 구직유인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고, 따라서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근시안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연금 대출이 실직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실직시 연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에게 재취업후 대출 상환을 위한 추가적 강제저축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저축은 실직자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실직시 구직유인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강제저축 방법은 후생을 감퇴시키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강제저축이 없더라도 연금 대출 상환을 위해 자신이 재취업 후 자발적으로 저축을 늘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근시안적인 근로자가 자신의 저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강제저축의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분배적 측면

통합실업보험제에 관해 부정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점은 이 제도가 기존의 실업보험 제에 비해 바람직하지 못한 분배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에 속하는 근로자들일수록 실직위험이 높은데, 통합실업보험제에서는 실직되면 자신의 소득에 의해 소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기존의 실업보험 제는 정부가 징수한 실업보험세에 의해 실직자 소비가 충당되어 보다 공정적인 분배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두 가지 반대 논리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통합실업보험제에서 제공하는 자가보험은 기존의 개인저축에 의해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의해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저축 능력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직자 개인의 소득으로 실직시 소비가 충당되지 만 그 부담은 일생에 걸쳐서 분산되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시점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가 소득 수준이 높은 근로자에 비해 미래의 기대소득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⁹⁾ 이는 실직을 당한 저소득자로서는 대출에 의한 소비 재배분이 후생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둘째로, 정부는 연금에 대해 재배분 정책을 통하여 고임금근로자로부터 저임금근로자로 약간의 연금 이전을 함으로써 통합실업보험제의 분배적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실제로 실업에 따른 소득 손실은 일생소득에 비해 매우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연금 이전의 크기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9) A. Bjorklund(1993).

IV. 통합사회보험제도

근로자들은 일상 동안 실직위험뿐 아니라 의료사고, 재해 등 여러 가지 위험을 경험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하여 실업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사회보험들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 때문에 각 위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보장과 도덕적 해이 간의 상충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통합실업보험제의 논리를 다른 사회보험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사회보험을 연금에 통합시켜 사고를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들의 유인을 크게 감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위험에 대한 보장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사회보험을 연금에 통합시킬 경우 우리는 일종의 통합사회보험제를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본절에서는 통합사회보험제는 근로자들의 후생증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통합사회보험제가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인가 등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연금에 여러 사회보험을 통합할 경우 우려될 수 있는 것은 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금액이 늘어나 위험에 대비한 자가보험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개별 근로자의 연금 잔고가 최저 퇴직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근로자 퇴직시 개별 연금 잔고가 최저생활 수준 이하가 되면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보전해 준다. 이 경우 통합사회보험 시행에 따라 최악의 위험은 정부 개입으로 회피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즉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는 자신의 연금으로부터 충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근로유인이 감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금에 통합되는 사회보험의 크기가 크고 종류가 많으면 그만큼 근로자의 소득보장 정도가 떨어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유인도 감퇴하게 된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감안할 때 과연 어떤 범위의 사회보험들이 연금에 통합되고 어떤 사회보험들은 독자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모든 사회보험이 연금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보험이 연금에 통합되는 경우 그 후생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위험들간의 상호 연관성이다.

모든 위험들이 상호 양(+)의 방향으로 완전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면 이 위험들은 기본적으로 한 위험으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본고의 논리에 따라 연금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 통합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후생증대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각 위험들이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면, 즉 각 위험들이 동일한 위험이 아니라면 이들을 연금으로 통합할 때 우리는 추가적인 후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통합사회보험제는 주어진 개인의 연금을 상황에 따라 여러 위험에 신축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실직 없는 경력을 오래 유지해 오면서 연금저축을 상당한 수준 축적했다고 했을 때 그 개인이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그의 연금저축의 일부가 그 의료사고에 대한 자가보험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통합사회보험제가 각 위험에 연금 대출 배분을 효율적으로 함에 따라 기대되는 후생증대 효과는 각 위험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각 위험의 양(+)의 상관관계가 작을수록 그 후생증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은 후생분석에 비추어 볼 때 통합사회보험제는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사회보험 개혁의 방향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통합사회보험제에 포함될 각 위험의 상관성이 따라 각 위험별 연금 대출 혹은 자가보험의 수준이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위 Provident Fund는 궁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이 Provident Fund는 개인의 강제저축으로 개인별 구좌에 적립하게 하고 일정한 위험발생시 — 예컨대, 의료사고, 산업재해 등 —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사회보험 대신 강제저축에 의한 자가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제도는 본고에서 논의한 통합사회보험제도와는 몇 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째, Provident Fund는 사회보험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100% 자가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통합사회보험은 사고 당사자의 소비 중 일부는 사회보험금으로 충당한다. 둘째, 보다 중요한 차이는 Provident Fund는 개인 구좌에 적립된 금액 이상으로는 인출이 불가능한데 비해, 통합사회보험제에서는 축적된 개인의 연금저축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다. 따라서

Provident Fund는 개인의 기간별·상태별 소비 평준화를 달성하는 데는 통합사회보험제에 비해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실업보험이 실직에 대비한 소득보장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여전에서 본고는 실업보험을 개인별 연금에 통합시킴으로써 후생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직자에게 기존의 실업급여뿐 아니라 그의 미래 연금을 기초로 자가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실직자의 구직유인을 감퇴시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통합실업보험이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은 자가보험에 따른 소득 감소가 전 일생에 걸쳐 분산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어진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적은 위험 부담으로 실직자의 구직유인을 유지하면서 실직자들의 소득보장을 피할 수 있어서, 기존의 실업보험이 비해서 구직유인과 위험 부담간의 상충관계를 한층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실업보험이 실직자 소득을 실업급여와 연금을 기초로 한 자가보험으로 충당하지만, 충분한 자가보험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서의 실업급여 수준은 기존의 실업보험이에서의 실업급여 수준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된다. 특히 실업급여의 재취업 탄력성이 매우 낮지 않으면 통합실업보험이 실업급여를 포함하지 않고 실직자 소득이 100% 자가보험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와 자가보험의 상대적 크기는 근로자의 위험기피도, 실업급여의 재취업 탄력성, 그리고 실업기간이 일생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합실업보험이 개인의 미래 연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자가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해 후생증대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실업보험이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 기간별 소득 평준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근로자가 자신의 저축으로 실직시 소비를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면 통합실업보험이 불필요해진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실직자는 필요한 자가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저축 잔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통합실업보험이 당위성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통합실업보험제가 당위성을 갖는 조건을 밝히고 있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증대 논리를 다른 사회보험에도 적용시켜 모든 사회보험을 연금에 통합시키는 통합사회보험제를 제시하고 그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통합사회보험제의 후생증대 효과는 사회보험들이 대상으로하는 각 위험들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됨을 밝혔다. 그리고 통합사회보험제의 후생증대 논리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볼 수 있는 Provident Fund와 관련됨을 설명하고 이 관점에서 장기적인 사회보험체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Asher, M.G. *Social Security in Malaysia and Singapore Practices, Issues and Directions*.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laysia, 1994.
- Bjorklund, Anders. "A Comparison between Actual Distributions of Annual and Lifetime Income: Sweden 1951-92".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9 (1993): 377-386.
- Costain, J. "Unemployment Insurance with Endogenous Search Intensity and Precautionary Savings". Working Paper, Universität Pompeu Fabra, 1999.
- Feldstein, Martin and Daniel Altman. "Unemployment Insurance Savings Account". NBER Working Paper 6860, 1998.
- Folster, S. and Trofimov, G. "Social Insurance based on Personal Savings Account: A Theoretical Analysis". Working Paper, The Swedish Research Institute of Trade, Stockholm, 1999.
- Folster, S. "An Evaluation of Social Insurance Savings Account", mimeo, 2000.
- Lentz, R, and Tranas, T. "Job Search and Savings: Wealth Effects and Duration Dependence". Working Paper, Northwestern University, 2001.
- Orzag, M.J., Orzag, P.R., Snower, D.J., and Stiglitz, J.E. "The Impact of Individual Accounts: Piecemeal vs. Comprehensive Approaches". Presented At the Annual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The World Bank, 1999.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Paris, 1996.

Stiglitz, J.E. "Perspectives on the Role of Government Risk-Bearing within the Financial Sector". In *Government Risk-bearing*. M. Sniderman (ed.), Norwell, Mas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p.10930.

Vodopivec, M. and Yun, J. "Unemployment Benefits Through Unemployment Savings Account". The World Bank, mimeo.

부록: 정리 증명

(정리 1)

식 (14), (15)를 다시 쓰면

$$s_1^* = s_1(r, \delta, M, N, q) : -X_{1,n} + q^* X_{u,n} = 0 \quad (\text{X1})$$

$$r^* = r(s_1; \delta, \eta, M, N, q) : \delta X_{u,n} - \frac{\eta}{1 - q^* + \eta} = 0 \quad (\text{X2})$$

따라서 $r^* = 0$ 이 되기 위해서는 $q^* = q^o$, $r^* = 0$ 일 때 (X2)에 의해

$\delta X_{u,n} - \frac{\eta}{1 - q^* + \eta} < 0$ 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정리 1이 성립.

(정리 2)

우선 $Q_s \equiv -D_{1,n} + q^* D_{u,n} = 0$, $Q_r \equiv -D_{u,n} + \frac{\eta}{1 - q^* + \eta} = 0$ 라고 하자.

Q_s , Q_r 를 각각 s_1, r 에 대해 미분하면

$$\frac{\partial r^{-1}(r)}{\partial \gamma} < -1 < \frac{\partial s_1(r)}{\partial s_1} < 0 \quad (\text{X3})$$

임을 알 수 있다.

$$(i) 0 = \frac{\partial s_1(r)}{\partial \eta} > \frac{\partial r^{-1}(r)}{\partial \eta} = \frac{\partial Q_r / \partial \eta}{\partial Q_r / \partial s_1} = \frac{(1 - q^*) / (1 - q^* + \eta)^2}{\partial Q_r / \partial s_1} < 0.$$

따라서 $\frac{\partial r^*}{\partial \eta} < 0$. (9)에 의해 $\frac{\partial R^*}{\partial \eta} = \frac{1}{M+N+1} [-(M+N) \frac{\partial r^*}{\partial \eta} + \frac{\partial s_1^*}{\partial \eta}] < 0$ 이 되는

데, 그 이유는 $\frac{\partial s_1^*}{\partial \eta} = \frac{\partial s_1(r^*)}{\partial \eta} + \frac{\partial s_1(r)}{\partial r} \frac{\partial r^*}{\partial \eta} > \frac{\partial r^*}{\partial \eta}$ ((X3)에 의해)이고 $\frac{\partial s_1(r^*)}{\partial \eta} = 0$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frac{\partial r^*}{\partial \eta} < 0$ 이므로 $\frac{\partial R^*}{\partial \eta} < 0$ 이고 또 $\frac{\partial(s_1^* + r^*)}{\partial \eta} < 0$ 혹은 $\frac{\partial C_u^*}{\partial \eta} < 0$ 이다.

(ii) 우선 $\frac{\partial s_1(r)}{\partial \delta} = \frac{\partial Q_s / \partial \delta}{\partial Q_s / \partial s_1} = -\frac{(X_{1,u}^2 - q^* X_{u,n}^2)/2}{\partial Q_s / \partial s_1} > 0$ 이다.

그리고 $\frac{\partial s_1(r)}{\partial \delta} < \frac{\partial r^{-1}(r)}{\partial \delta} = \frac{\partial Q_r / \partial \delta}{\partial Q_r / \partial s_1} = -\frac{(X_{1,u}^2 - X_{u,n}^2)/2}{\partial Q_r / \partial s_1} (> 0)$ 이다.

(왜냐하면 $-\frac{\partial Q_r}{\partial s_1} < \frac{\partial Q_s}{\partial s_1}$ 이기 때문). 따라서 $\frac{\partial r^*}{\partial \delta} > 0$ 이다. 그리고 $\frac{\partial r^{-1}(r)}{\partial r} < -1 < -\frac{\partial s_1(r)}{\partial r}$

이므로 $\frac{\partial(s_1^* + r^*)}{\partial \delta} > 0$ 혹은 $\frac{\partial C_u^*}{\partial \delta} > 0$ 이다.

(iii) 정리 1로부터 명백함.

(정리 3)

(X1)과 (X2)를 r^* 와 s_1^* 에 대해 풀면

$$r^* + s_1^* = \frac{N}{M+N+2} - [1 - \frac{\eta/(1-q^*+\eta)}{\delta}] (M+N+1)](1-q^*(M+N)) - q^* \quad (X4)$$

이 된다. (X4)를 식 (17)에 대입하면 식 (18)을 얻는다. 또 $\frac{\partial h}{\partial \delta} > 0$ 이고 $\frac{\partial h}{\partial M} |_a > 0$ 이 된다

(왜냐하면 $\frac{\partial e^*}{\partial N} \approx 0$ 이고 큰 M과 N에 대해 $\frac{1}{M+N} \approx \frac{1}{M+N+2}$ 이기 때문임)

(정리 4)

주어진 r 에서 $\max_{i,j=1,u,n} |C_i^* - C_j^*| = C_n^* - C_u^* = \frac{1-r}{N(1+a)}$ 이다. 여기에서 $\epsilon (> 0)$

에 대하여 $\frac{1}{K(\epsilon)(1+a)} = \epsilon$ 이 되도록 $K(\epsilon)$ 를 정의하면, 모든 $N (> K(\epsilon))$ 에 대하여

$\max_{i,j=1,u,n} |C_i^* - C_j^*| < \epsilon$ 가 된다.

(정리 5)

일정한 a 값을 유지하면서 M과 N이 무한대로 근접하면, 정리 1에 의해 $r^* \rightarrow 0$ 된다. 또 그에 따라 $C_1^*, C_n^*, C_u^* \rightarrow \frac{a}{1+a}$ 가 되고 $e^* \rightarrow U(\frac{a}{1+a}) = e^e$ (\therefore 완전한 구직유인) 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기대효용은

$$\begin{aligned} V^* &= U(C_1^*) + (1-q^*)I(.) + q^*J(.) - q \int_0^{e^*} edF \\ &= U(C_1^*) + (M+N+1)U(C_n^*) - q^*[(1-r^*)U(C_u^*) + (U'/2)(M+N+1)X_{u,n}^{*2}] \\ &\quad - q \int_0^{e^*} edF \rightarrow (M+N+2)U(\frac{a}{1+a}) - q^e U(\frac{a}{1+a}) - \int_0^{e^*} edF \equiv V^e. \end{aligned}$$

즉, 완전한 구직유인과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기대효용 수준.

abstract

Integr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with Retirement Insurance and Its Welfare Analysis

Jungyoll Yun

This paper analyzes a social insurance system that integrates unemployment insurance with a pension program, allowing workers to borrow against their future wage income to finance consumption during an unemployment episode and thus improving their search incentives while reducing risks. This paper ident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integration improves welfare and the factors which determine the optimal degree of integration. A fully integrated system is one in which no reliance is placed at all on a separate tax-funded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We show that whe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is very short compared to the period of employment or retirement, the optimal system involves an exclusive reliance on pension-funded self-insurance. This system imposes a negligible risk burden for workers while avoiding attenuating search incentives. We also argue that a joint integration of several social insurance programs with a pension program through an individual account is desirable unless the risks are perfectly correlated to each other.

Key words : Integrated Unemployment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Pension, Search Incentive